

의 안 번 호	제 119 호
의결 년월일	1996. 11. 25.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발 의 자	광창우 의원외 3인
제출년월일	1996. 11. 25.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수 신 : 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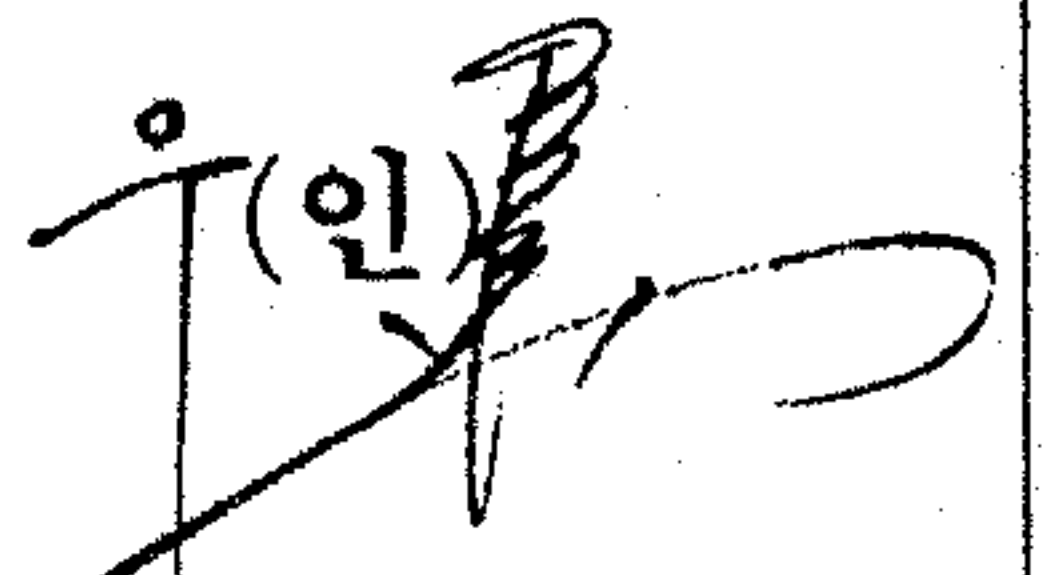
제 목 :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6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안건 1부. 끝.

발 의 자 : 방

장

(인) 

(찬 성 의 원 서 명 : 붙 임 참 조)

■ 제 안 설 명

○ 96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은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고자 제안합니다.

1.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보은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함.

2. 감사의 실시기간은

1996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3.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17개 실과사업소,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4. 감사반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사하고자 합니다.

5. 세부적인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방법 및 요령은 기배
부된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안찬성의원서명

성명	서명	(인)
이정우	이정우	
이성우	이성우	
이종우	이종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보 은 군 의 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1996. 12. 7(토) ~ 1996. 12. 13(금) (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산업과, 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읍면.

4. 감사반편성 (감사특별위원회)

- 감사 위원장 - 홍창우
- 간 사 -

- 감 사 위 원 -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10명)
- 사무 보조자 - 전문위원 황중학
의사계장 최재열
직 원 2명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사 대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996. 12. 7(토) 10 : 00	군본청 → 군정전반	본 회 의 실	본회의감사
12. 8(일) ~ 12. 9(월)	"	현지(현장)	특별위원회 감 사
12. 10(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일반행정분야	본 회 의 실	"
12. 11(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 사회복지행정분야	"	"
12. 12(목)	농정과,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 산업행정분야	"	"
12. 13(금)	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 개발행정분야	"	"

6. 감사 방법 및 요령

1)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범위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2) 질문 및 답변청취

- 회의식으로 진행
- 질문,답변을 통한 추궁.확답
- 정책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 진행
-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개발 제시

3) 현지확인 및 증언, 의견진술청취

-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청취

4)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 기관위임사무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감사 불가
- 개인의 사생활 침해불가
-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불가
- 집행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감사불가

행 정 사 항

1. 질문요지 작성제출

감사특위 위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 96년 12월 4일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특위 위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의견을 작성 감사종료 3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감사특위 위원장은 감사경위와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에 따른 의견이나 특기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12월 27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의장(본회의)에게 보고한다.

